

안전확인 안전기준

수유패드

부속서 69

(Nursing Pad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유패드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수유패드란 모유수유 기간 동안 모유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유부가 착용하는 직물 또는 부직포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KS K 0733 섬유 및 가죽제품의 오염화석탄산(PCP)함유량 측정방법

KS K 0734 폴리에스테르 섬유제품중의 아릴아민 함유량 시험방법

KS K ISO 3071 텍스타일-수성 추출액의 pH 측정

KS K ISO 14184-1 텍스타일-포름알데히드 측정-제1부: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증류수 추출법)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3. 종류

적용되는 제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1 직물 수유패드

3.2 부직포 수유패드

3.3 혼합재질 수유패드

4. 구성 및 재료

피부 접촉면, 흡수층, 겉면 또는 방수층 등으로 구성되며 재료는 표시내용과 같아야 한다.

4.1 **피부 접촉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면으로 구성상 최상위층에 있는 면을 말한다.

4.2 **흡수층** 흡수하는 층으로 구성상 중간층에 있는 면을 말한다.

4.3 **겉면 또는 방수층** 구성상 최하위층에 있는 면으로 흡수된 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방수하는 면 등을 말한다.

5. 안전요건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의 안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 안전요구 사항

항 목	기 준 치	
pH	3.0 ~ 10.0	
형광증백제	검출되지 않을 것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mg/kg)	20 이하	
염소화페놀류 (mg/kg)	PCP ¹⁾	0.5 이하
	TeCP ²⁾	0.5 이하
아조염료 ³⁾ (mg/kg)	각각 30이하	
납 ⁴⁾ (mg/kg)	300 이하	
카드뮴 ⁴⁾ (mg/kg)	75 이하	

비 고 1 PCP란 pentachlorophenol로서 PCP자체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2 TeCP란 2,3,5,6-tetrachlorophenol로서 TeCP자체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TeCP 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3 염색한 경우만 적용한다.

4 페인팅, 코팅, 금속제품의 표면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시험방법

6.1 pH pH의 시험은 **KS K ISO 3071**에 따른다. 단, 시험편은 **피부 접촉면**을 시험하고 흡수층이 있는 경우 흡수층을 제거하고 시험한다.

6.2 형광증백제 보건복지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중 '냅킨'에 대한 형광증백제 시험방법을 따른다. 단 시험편은 피부접촉면만 채취하여 시험한다.

6.3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시험은 **KS K ISO 14184-1**에 따른다. 단 흡수층이 있는 경우 흡수층을 제거하고 시험한다.

6.4 염소화페놀류 함유량 염소화페놀류 함유량 시험은 **KS K 0733**에 따른다. 단 흡수층이 있는 경우 흡수층을 제거하고 시험한다.

6.5 아조염료 함량 아조염료 함량 시험은 **KS K 0147, 0734**에 따른다. 단 시험편은 염색한 부위만 채취하여 시험한다.

6.6 납 및 카드뮴 함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7. 검사방법

7.1 모델의 구분 수유패드의 모델은 **3**에 의한 종류별, 주요재질별로 구분한다. 여기서, 재질별이란 구성 성분 중 단일 성분 함량이 60 %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단일 성분 함량이 60 % 미만인 경우 구성 성분 중 함유량이 큰 것부터 합산하여 70 % 이상이 되는 각각의 구성 재질별로 구분한다.

7.2 시료채취방법 필요할 경우 **KS Q 1003**에 따른다.

7.3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합부판정 시 표 시사항은 제외한다.

검사구분	시료의 크기(n)	합격판정 갯수(Ac)	불합격판정 갯수(Rc)
안전확인	1	0	1

주) 시료의 크기(n):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 수량 또는 질량

8. 표시사항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8.1 재 료 주재료명을 표기하며 안감, 흡수층, 방수층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8.2 포장단위 최소 판매단위 개수로 표시한다.

8.3 제조연월

8.4 제조자명

8.5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6 주소 및 전화번호

8.7 제조국명

8.8 사용상의 주의사항

8.8.1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8.8.2 피부에 발진 등 이상이 생기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할 것

8.8.3 기타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추가 주의 사항(필요시)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5호(2012.04.25)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5호(2015.12.30)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2호 (2017. 2. 8)